

울산지방법원 2022. 1. 25 선고 2020나165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2. 1. 25 선고 2020나16556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0. 10. 20 선고 2019가단107523 판결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유한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

피고, 항소인 1. D

2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법조

담당변호사 최상무, 천성연

변론 종결 2021. 11. 9.

판결 선고 2022. 1. 25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. 10. 20. 선고 2019가단107523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청구취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8,220,9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,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약어는 제1심 그대로 쓴다).

○ 제4면 4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「B은 2018. 3. 22. I에게 울산 중구 J 임야 6395㎡ 중 6395분의 1524 지분(이하 '이 사건 일부 임야'라 한다)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1589호로 2018. 3. 2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.1)」

○ 제5면 3행의 [인정하는 근거] 부분에 '갑 제21호증의 1, 2」를 추가한다.

○ 제5면 10 내지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「①B이 이 사건 각 매매와 이 사건 일부 임야를 매매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, ②B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2)」

### 2. 추가판단

#### 가. 피고들 주장의 요지

B이 F 직원 급여, 대출원리금 등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요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다. 피고들은 B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, 매수대금 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,000만 원은 모두 F의 인건비, 거래처대금, 금융기관 이자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.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 행위는 편파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들은 선의이다.

설령 이 사건 매매 행위가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63,803,400원은 F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는데,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장받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, 이 부분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## 나. 판단

1)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·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,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.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, 행위의 목적·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,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,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,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,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(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87648, 287655 판결 등 참조)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일부 F의 임금 등 운영비로

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, 위 임금 등은 F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서 법률적으로 B의 채무라고 볼 수 없는바,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여 B에 대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B와 피고들의 관계, 이 사건 매매 시점과 B의 파산신청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,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이준영**

**판사장성신**

**판사박관형**

1) 원고가 B의 이 사건 일부 임야 매도 행위에 대하여 2020. 5. 6. 울산지방법원 2020하기503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, 위 법원이 2021. 2. 17. 위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 사건 일부 임야는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였다.

2) 이 사건 일부 임야의 가액이 1억 2,447만 원(2014. 12. 3. B 매수대금 기준) 또는 9,000만 원(2018. 3. 21. I 매수대금 기준)이고, B가 파산선고신청을 한 2018. 10. 5.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0,341,927원(이 사건 일부 임야 및 이 사건 부동산 불포함)인 반면, 소극재산은 11,598,997,936원이었다.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일부 임야도 B의 책임재산이기는 하였으나, 이를 고려하더라도 B의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된다.